

법무부

즉각 발표
2006년 12월 5일

맥긴티 정부는 **HUMAN RIGHTS CODE AMENDMENT ACT (인권 헌장 수정 법)**을 통과 시킴으로써 법의 이용을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맥긴티 정부는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송을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타리오의 인권 제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인권 헌장 수정 법, 2006 (법안 107)은 44년 전에 입법된 이후 온타리오 인권제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은 온타리오의 인권 홍보, 발전 그리고 법 집행을 개선 할 것입니다.

1992년의 코니시 보고를 포함한 몇 개의 보고서의 추천과 일치하는 본 개혁은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온타리오 주의 인권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권 헌장 수정 법, 2006에 따라 개개의 소송을 온타리오 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새로운 소송 제도가 시행 됩니다.

소송 제기 기간에 맞고 재판소의 재판권한에 속하면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소송은 보다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따라 각기의 내용에 따라 청문 될 것입니다. 단체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불평을 대신 제기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이는 인권 범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일년으로 연장 됩니다.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판관의 임명은 투명하고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는 공공 이익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여하한 사건이라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되며 재판소에 소송된 모든 건에 개입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의 소송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온타리오 주민에게 보고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그 외의 여하한 보고도 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처음으로 위원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요구되며 그 구성은 온타리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의거 Legal Support Centre 가설치 되는데, 이는 공금으로 운용되며 공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재판소에 제출된 소송 건의 법률과 기타 모든 면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주 전체에 비용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재판 명령을 집행을 포함하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소자에게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사법 이용 개선

정부는 이 외에도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공 하면서도 온타리오의 사법 제도를 현대화하고 이용을 편하게 개선하는 데에 많은 주도권을 행사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14, Access to Justice Act 을 통과 시켰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 법무사를 규제하고
- Justices of the Peace Act 을 수정하고,
- Provincial Offences Act 을 수정하고
- 온타리오의 헌법과 조례를 해석 및 공포 하는 규정을 현대화하는 Legislation Act 을 제정하고
- Limitations Act 을 수정하고
- Courts of Justice Act 을 수정하게 됩니다.
- 소송을 빠른 기간 내에 처리 하기 위하여 판사 61 명, 치안 판사 45 명을 임명하고 추가적으로 재판소 임원을 보충합니다. 정부는 또한 총기 및 조직 폭력 전문 팀을 전담할 검사 64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법원에서 가족 및 아동 보호 사건을 취급할 판사 6 명을 보충하였습니다.
- 사법행정을 개선하고 사법 이용을 증진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온타리오 법률 위원회를 재 설치 하였습니다.
- 법안 103, Independent Police Review Act 를 입안하였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온타리오의 경찰 심사 제도를 전담하는 독립된 민간 기관이 설치 됩니다.
- 2006 년과 2007 년에 Legal Aid Ontario 자금을 1,300 만 불 증가합니다. 2003 년 10 월 이후로 맥킨티 정부는 기본 자금을 10 퍼센트인 2,500 만 불을 증가하였습니다.
- 사법 제도를 언론 기관과 공중에게 공개하고 사법 연관 기관과 언론에게 관련된 정보를 얻을 기회를 홍보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 정부 변호사가 사회에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무료 특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는 Adopt-a-School Project 를 포함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변호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법과 시민에 관한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 모든 가정법 중재가 온타리오와 캐나다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 27, Family Statute Law Amend Act, 를 입안하였습니다.

- 30 -

연락처:
 브렌단 크럴리
 법무부
 공보실
 (416) 326-2210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일반 전화 문의: 416-326-2220 또는 1-800-518-7901

시각 장애인은 상기 전화를 사용하면
 본 문서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TTY: 416-326-4012

본 문서는 14 개 국 언어로 번역됩니다..
 번역 문은 곧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볼 수 있습니다.